

第 17 回 鷄 龍 市 議 會

第 1 次 定 例 會

2005. 7. 6(水)

檢 討 報 告 書

①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②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鷄 龍 市 議 會

專門委員 金 泳 鎮

檢 討 報 告

□ 制定背景

- '03. 7. 30일 개정·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6960호)에 따라 계룡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主要内容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규정(안 제2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 및 구성방법(안 제3조)
-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 위원의 해촉을 규정(안 제7조)
- 각 협의체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안 제8조)
- 각 협의체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의결사항의 시장への 보고 등을 규정(안 제9조)
- 시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한 시책 반영노력 의무를 규정(안 제11조)
- 각 협의체 위원장의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의 요청 등에 대해 규정(안 제12조)
-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안 제14조)
-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 檢討意見

-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檢 討 報 告

□ 改定背景

- 의료급여 대불금을 상환기한 미상환할 경우 의료급여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세대에게 이중적 고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정신적 고통 경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主要内容

-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기한내 미상환시 급여정지한다는 조항 삭제(제7조제2항)
- 의료급여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 미상환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조항에서 ‘의료급여 정지’를 ‘대불금의 독촉’으로 개정(제7조제3항)

□ 檢討意見

-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2조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현재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불금을 상환기한 내에 미상환할 경우 의료급여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

세대에게 이중적 고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정신적 고통 경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인정되며,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